[#.붙임] 기관추천특별공급 안내문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송도국제도시 A1블록)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 주택명칭 :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 최고38층, 25개동 및 총 3,100세대 中 조합원자격상실 189세대 일반분양**

※ 본 아파트는 2회 분할 공급하며 1회차 117세대(조합원 탈퇴, 제명세대)를 제외한 2회차 72세대(소송, 기각세대)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공급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2회차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공급 예정)

○ **문의전화 :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분양사무실 T.032-859-0190**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총 7세대,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 10%범위 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 타입별 세대수**

주택형(타입)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84G	합계
일반분양 세대수		3	18	34	18	10	9	16	7	2	117
장애인	인천광역시	-	-	1(5)	-	-	-	-	-	-	1(5)
	서울특별시	-	-	-	1(5)	-	-	-	-	-	1(5)
	경기도	-	-	-	-	1(5)	-	-	-	-	1(5)
	소계	**-**	**-**	**1(5)**	**1(5)**	**1(5)**	**-**	**-**	**-**	**-**	**3(15)**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	-	1(5)	-	-	-	-	-	-	1(5)
	장기복무제대군인	-	1(5)	-	-	-	-	-	-	-	1(5)
	소계	**-**	**1(5)**	**1(5)**	**-**	**-**	**-**	**-**	**-**	**-**	**2(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1(5)**	**-**	**-**	**1(5)**
중소기업근로자		**-**	**-**	**1(5)**	**-**	**-**	**-**	**-**	**-**	**-**	**1(5)**
계		**-**	**1(5)**	**3(15)**	**1(5)**	**1(5)**	**-**	**1(5)**	**-**	**-**	**7(35)**

※ 괄호( )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2.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 분	일정(예정)	내 용
입주자모집공고 (사이버견본주택 오픈)	**2021년 1월 29일(금)**	*** 일간신문 / 분양 홈페이지 (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특별공급 접수 (인터넷 청약)	**2021년 2월 08일(월) (08:00~17:30)**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1년 2월 18일(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당첨자 서류접수	**2021년 2월 19일(금) ~ 2월 24일(수), 6일간**	*** 우편접수 주소(등기발송 필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 위치)** *** 우편 소인날짜 기준 : 2021년 2월 24일 (수)까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접수'만 접수 진행합니다.**
계약체결	**2021년 3월 08일(월) ~ 3월 10일(수), 3일간**	*** 장소 : 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 위치) ***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사홈페이지 참고** *** 시간별 예약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으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하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접수 및 세대 방문, 정당 계약일 기간은 당첨자 본인만 홈페이지 사전 방문예약을 통하여 방문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발표 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당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사업주체 대표번호(032-859-0190) 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1.29.예정)**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 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통장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당첨자 선정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필수. •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신청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2021.02.18.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 가능 • 신청주택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결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2018.12.11.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기타사항

○ 공급금액, 전매제한/재당첨 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01.29.(금)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분양사무실 대표번호(032-859-0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분양사무실 위치도

6. 단위세대 평면도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84㎡G
알파룸 욕실2 주방/식당 현관 욕실1 침실1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2 현관 침실3 욕실1 욕실2 주방/식당 드레스룸 침실1 거실	주방/식당 팬트리 침실2 침실3 현관 거실 욕실1 욕실2 침실1 드레스룸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명단 양식 예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양식 예시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총 _____ 명 (확정 : 00명, 예비 : 00명)

기관추천특별공급(유형)	추천기관명	주택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구분(당첨/예비)
장애인 특별공급	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	84㎡E	ㅇㅇㅇ	123456-1234567	당첨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인천보훈지청(보상과)	74㎡B	ㅇㅇㅇ	123456-1234567	예비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 및 확정대상자(당첨자)와 예비대상자를 필히 구분하여 표시 부탁드립니다.
- 각 타입별 확정 및 예비인원을 선정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 **예비대상자는 타입별 공급대상의 500%를 선정합니다.**